우송지수 운영위원회 규정

제 정 2015. 12. 개 정 2023. 03.

제1조 (명칭) 이 위원회는 우송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 우송지수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지수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 (위치) 위원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교내에 둔다.

제4조 (설치) 본 대학의 우송지수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과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송대학교 우송지수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함)를 둔다.

제5조 (구성 및 운영)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취업지원센터장이 되고, 교무처장, 학생복지처장,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3.03.08.)

제6조 (임무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- ①우송지수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.폐에 관한 사항
- ②우송지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
- ③우송지수 운영 지침서에 관한 사항
- ④우송지수 운영에 따른 우수학생 선발 및 시상에 관련된 사항
- ⑤우송지수 운영에 관한 연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
- ⑥우송지수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
- ⑦기타 우송지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

제7조 (소집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- ①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- ②총장 및 위원장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

제8조(의결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. 제9조(의결집행)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의 특례) 이 규정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